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5
------	-----

2009. 2. 1  
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1.30.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2.4.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2009.2.18.)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 2.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자 :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안석수)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9년 1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55호로 2009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의 반영에 대한 의견(안 제1조, 안 제9조)

- 행정안전부는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2007. 10. 잡종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인용법조문을 공유재산에 관한 일반규정인 동법 "제6조"로 개정할 것과<sup>1)</sup>(안 제1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한 경우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대해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부분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통칙부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를 인용한 것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을 법적성격을 잡종재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재산처분 및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 공유재산의 경우 잡종재산을 제외하고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취득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하려는 점에 있어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 또한 통상적으로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시설물은 무허가시설물로서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함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sup>2)</sup>, 운영자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 ①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2511(2007.10.19)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되면 시설물의 설치자가 그 시설물을 철거함은 당연하므로 단서는 의미 없음" 삭제 권고

## ▷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의견(안 제4조제2항 제3호)

- 동 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건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강화하고 있음.
-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영업시설물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민관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sup>3)</sup> 개정안과 같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요건을 강화한 것은 위원장의 참여를 독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은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과 가지조항을 정비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2006)』에 따라 협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나봉주 외 240명 현법소원심판청구(사건번호: 2007헌마 1422,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